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54

발의연월일: 2024. 7. 3.

발 의 자:이훈기·김정호·박희승

김태선 · 황 희 · 서영교

노종면 • 양문석 • 문금주

최민희 · 김교흥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음. 동법 시행령은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'를 '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'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'등'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4호).

법률 제 호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4호 중 "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을 "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"으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제21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 심의 | 제21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 |
|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| |
| 같다. | |
| 1. ~ 3. (생 략)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|
| 4.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 | 4 |
| 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| |
|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|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|
|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|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|
| <u>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정보의 심 | 률」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 |
| 의 및 시정요구 | 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|
| | |
| 5. ~ 9. (생 략) | 5. ~ 9. (현행과 같음) |